

대한민국

인신매매감시대책국

2014 년 인신매매보고서

1 등급

대한민국(한국 혹은 남한)은 성매매와 강제노동을 당하는 남성과 여성, 아동의 송출국·경유국·목적국이다. 한국 여성은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홍콩, 두바이, 대만, 마카오를 포함한 국내외에서 강제로 매춘을 강요받고 있다. 일부 여성은 관광, 취업, 유학 비자로 목적국에 입국한 후 안마시술소, 룸살롱, 주점, 식당이나 인터넷 매춘업체를 통해 강제로 매춘에 종사한다. 상당수 피해자는 자신이 채무를 지고 있는 악성 채권자, 그리고 그러한 악성 채권자와 공모하는 유흥업소 업주의 강압에 의해 매춘을 강요받는다. 인신매매범들은 본국 송환, 피해자 가족을 겨냥한 보복, 여권 압수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한다. 일부 장애인을 포함하여 수백 명의 한국인 남성이 국내 염전에서 강제 노동을 강요받고 있으며 언어적·신체적 가혹행위, 임금 체불, 장시간 근로, 열악한 근무·생활 조건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 아동은 온라인을 통한 상업적 성착취에 대한 취약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매년 약 20 만 명의 청소년이 가출을 시도하며, 그 중 일부는 거처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매춘에 나선다. 가족이나 한국 내 범죄조직은 취업을 빌미로 동남아시아 국가의 아동들을 유인하여 한국에 입국시킨 후 매춘을 강요하고 있다. 한국 남성은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에서 아동 성매매 관광에 참가하고 있다. 일부 한국 원양어선 선원들은 키리바시에서 상업적 아동 성매매에 연루됐다.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필리핀, 몽골,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네팔, 스리랑카, 태국, 콜롬비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모로코, 파키스탄, 러시아, 동티모르, 우즈베키스탄 출신 남성과 여성은 한국에서 강제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이들 국가 출신 여성 중 일부는 매춘을 강요받는다.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그 중에서도 특히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출신인 경우 수천 달러의 빚을 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 인해 채무 노예로 전락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근로자가 상당수인 약 70 만 명의 저숙련 외국인근로자가 어업, 농업, 축산업, 제조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일부 외국인근로자는 임금 체불, 여권 압수, 채무 노예, 성적 가혹행위, 열악한 생활환경, 본국에서 제의받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직종 강요 등 강제 노동의 징후를 보이는 근로 조건에 직면해 있다. 2,500 명 이상의 외국인 여성이 미군 부대 근처 ‘쥬시 바(juicy bar)’에서 채무 노예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해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빌미로 한국에 입국한 몽골, 라오스, 네팔 여성 중 일부는 한국에 도착한 후에는 강제 매춘이나 강제 노동을 강요받는다. 한국은 피지를 비롯한 그 밖에 다른 태평양 항구로 출항하는 원양어선에서 강제 노동을 강요받는 동남아시아 선원들이 거처가는 경유국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한국은 보고 대상 기간 동안 2013 년 개정 형법을 근거로 인신매매 사범을 최초로 기소하여 유죄를 확정했다. 또한, 정부는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와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정부는

공식적인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를 처음으로 제정했다. 2013 년도 근로자 인신매매 유죄 확정 건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안:

개정 형법에 근거하여 인신매매 사범을 수사하고 기소하며 유죄를 확정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형법상 ‘인신매매’의 정의를 공식화해야 한다. 국내 아동 성매매와 해외 아동 성매매 관공에 참가하는 내국인들을 사전예방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새로 제정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를 적용하여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개인, 장애인 남성,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를 사전예방적으로 식별해야 한다. 정부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신매매 사건들을 사전예방적으로 수사하고 관련자를 기소해야 한다.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잠재적인 인신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일선에서 출입국 규정을 집행하는 절차를 표준화시켜야 한다. 인신매매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의 일관성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 국적 원양어선에서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사범에 대한 수사과 기소를 지속해야 한다. 성적 착취 및 노동력 착취 인신매매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금전적 합의를 도출하는 비율을 낮춰야 한다. 2000 년 유엔 인신매매방지협약에 당사국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범 처리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사범 처리 노력을 지속했다. 2013 년에 개정된 형법 제 31 장은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금하고 있으며 인신매매 사범을 1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량은 강간 등 다른 중범죄의 형량에 준하는 엄격한 수준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보다 형량이 낮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04 년), 근로기준법, 아동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여 대부분의 인신매매 사범을 처벌했다. 2013 년에 정부는 울산에서 일어난 강제 성매매 사건에 대해 개정된 형법의 인신매매 조항을 적용하여 최초로 유죄를 확정했다. 6 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 중 1 명은 징역 10~18 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는 집행유예 2 년 판결을 받았다. 정부는 그 밖에 다른 법률을 근거로 110 명의 인신매매 사범을 기소하여 성매매 사범 61 명(직전 연도의 경우 30 명)과 노동력 착취 인신매매 사범 11 명(직전 연도의 경우 19 명)의 유죄를 확정했다. 강제 성매매로 내몰린 가출 청소년이 연루된 기소 건수가 증가했다. 정부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아동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여 유죄가 확정된 피의자에게 징역 2~4 년 또는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했다. 일반적으로 유죄가 확정된 성매매 피의자는 징역 2~3 년과 벌금 및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지만 상당수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검찰과 경찰은 출입국관리규정의 일관성 없는 적용과 유죄가 확정된 사범의 실제 복역기간에 불만을 제기했다. 정부는 2014 년 3 월에 일부 장애인을 포함하여 수백 명이 관련된 염전 강제 노동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경찰은 전라남도에서 피해자들을 구조했다. 경찰의 단속으로 26 명 이상이 노동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으나 언론에서는 지방 경찰관들이 단속 직전에 염전 업주들에게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은닉하거나 증거를 폐기할 것을 사전에 귀띔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국적 원양어선에서 2012 년에 발생한 강제 노동 사건은 보고 대상 기간 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법무부는 일선 검사, 판사, 사법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정 형법에 대한 일련의 교육과 세미나를 주관했다. 2013 년에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 언론에서는 정부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수 건의 인신매매 사건을 보도했다. 2014년 2월에는 정부 지원 기관인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에 고용된 짐바브웨와 부르키나파소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채무 노예, 임금 미지급, 여권 압수, 열악한 생활환경을 고발했다. 이 박물관의 이사장이었던 국회 사무총장은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이사장직을 사퇴했지만 정부에서는 어떠한 사법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성착취의 대상이 되어 매춘을 강요받고 채무 노예로 전락할 위험성을 알면서도 외국인 여성들에게 E-6 연예홍행비자를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한 시민단체는 맹인 안마사를 고용하여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당국의 묵인하에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안마시술소 명단을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경기도 용주골 흥등가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흥등가 여성들은 채무 노예와 감금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받고 있으며, 성매매 여성들은 경찰관이 인신매매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자신이 성매매 업소에 빈번하게 출입한다고 보고했다.

피해자 보호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여성가족부는 시민단체 한 곳과 공동으로 2013년 11월에 공식적인 성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를 제정했으며 사법 공무원, 시민단체, 정부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2013년에 정부는 36명의 외국 국적 성매매 피해자를 식별하여 지원을 제공했다. 노동력 착취 인신매매 피해자에 관한 통계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입수가 불가능했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8곳의 쉼터를 계속해서 운영했다.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전용 쉼터에서 보호 중인 여성의 수는 2012년에 3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2013년에는 36명이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력지원센터 34곳과 상담센터 1곳을 운영했다. 수백명의 노동력 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이러한 센터에서 상담, 교육, 직업훈련, 숙식을 제공받았다. 또한,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숙소, 상담, 교육, 의료·법률 카운슬링을 제공하는 시민단체들에게 재정 지원을 실시했다. 경찰청에서는 성매매 피해자를 식별하여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성매매에 연루된 여성을 심사하는 과정에 사회복지사와 협력했다. 다만, 경찰 단속에서 적발된 여성들은 성매매 식별 지표를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구류와 벌금 처분을 받았으며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했다. 정부는 인신매매에 취약한 두 계층인 외국인 배우자와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지원센터 네트워크를 운영했다. 정부는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가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고통이나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적 대안을 제공했다. 피해자가 수사와 기소에 협조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정부에서는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2명에게 G-1 비자를 발급하고 최장 1년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예방 노력

정부는 인신매매 예방 노력을 확대했으며 성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여성가족부는 시민단체, 쉼터, 온라인을 통해 아동 성매매 예방 홍보 리플릿을 배포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해외 성매매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미국 내 한국인 성매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핫라인을 운영했다.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해 계속해서 14개국어로 핫라인을 운영했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선원들을 위해 계속해서 핫라인을

운영했다. 상담 통화 중 상당수는 임금 체불, 계약에 관한 질문, 사고 보상에 관한 것이었다. 핫라인 상담자들은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상담이 가능했다. 정부는 각급 학교, 정부부처, 지자체, 국영기업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인신매매에 관한 정부 차원의 정책기본계획은 없었지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었다. 고용노동부가 2013년 9월에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력 착취 인신매매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 퍼센트 이상이 여권 압수, 위협,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노동력 착취 인신매매 위반 사범을 연중 단속했다. 정부는 상업적 성착취 수요를 근절할 목적으로 아동(2013년 6월 입법) 또는 장애인(2013년 9월 입법)이 관련된 성매매 혐의로 검거된 모든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불허하는 법률을 시행했다. 2013년 9월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에서는 국영기업인 한국조폐공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아동노동으로 수확한 면사와 펄프를 지폐 원료로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남성은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군도에서 주로 여행사 단위 골프 그룹 투어나 사업 출장의 형태로 여행하며 아동 성매매 관광의 수요자로 남아있다. 2013년에 정부는 해외 성매매 관광으로 기소된 자에게 여권 발급을 추가로 제한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 남성의 동남아시아 성매매 및 아동 성매매 관광 근절을 주제로 2013년 7월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13년 7~8월에 경찰청은 한국 여성의 해외 강제 성매매를 주모하거나 한국 남성의 성매매 관광을 주선하는 브로커와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정부는 공항과 철도역 그리고 각국 주재 한국 대사관 웹사이트에 아동 성매매 관광에 관한 경고문을 지속적으로 게재했다. 하지만 지난 7년간 한국 정부가 한국인 성매매 관광객을 기소하거나 유죄를 확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정부는 해외 평화유지군 활동에 참가하는 장병과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방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2013년 12월에 외교통상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매매의 정의, 피해자 구조 절차, 예방 조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은 2000년 유엔 인신매매방지협약에 당사국으로 가입하지 않고 있다.